

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

| 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처 |
|------|--|--|
| 공통 |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(저축동의서 포함)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(방문신청시 동 담당자 확인 서명 필수)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★★★★☆ ⑥ 소득·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- (현장접수) 본인 신분확인철저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 - (대리신청) 대치신청 위임장, 대리신청인 + 신청인 신분 증빙서류 | * 직접작성 *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 주민센터 발급 - |
| 필수 | 근로소득자 | |
| | 상시근로 ⑨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 또는 ⑪ 고용임금확인서** ※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⑫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⑬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(최근 3개월)/ 신규입사자 전달 이체 내역 →전달 내역 없으면 지원 불가) - ⑪ 혹은 ⑫ 제출시 함께 제출 | * 재직처 발급 * 근로복지공단 발급 ** 직접작성 * 직접발급 |
| | 사업소득자 | |
| 소득증빙 | 기타 사업소득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(계약서 명칭 불문) ⑬ 소득금액증명원*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기타 사업소득(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)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(신고금액 포함) 제출 가능 | * 직접발급 * 국세청 흠택스 발급 |
| | 농림 축산업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, 농업인확인서*, 가축사육업 허가증·등록증**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| * 직접작성 *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사무소 ** 지자체 |
| | 어업소득 ⑯ 쌀(밭)직불금 확인서 등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, 어업인확인서*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| * 직접작성 *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,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- |

| 구분 | 제출서류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|--|
| 해당자만 | 재산 | • 전·월세(임대인) 또는 사업장 운영: 임대차계약서 |
| | 부채 | • 법원판결문*, 화해·조정조서 • 임대차계약서(임대보증금 확인) |
| | 가구특성 | • 장애인/장애인부양: 장애인증명서 • 법정 한부모: 한부모증명서 • 북한이탈주민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• 조손, 다문화, 3자녀 이상 가구(신청자 자녀 기준),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,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: 등본 |
| 제출 | 저축지속가능 |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(근로일수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• 경력증명서 • 고용임금확인서 •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* •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+ 급여이체 내역서 |

서류접수 관련 안내 : 소득 재산조사 과정에서 복지정책과 조사팀에서 추가서류 요청 있을 수 있습니다. 시에서 연락이 갈 수 있으니, 연락 받아주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부적합처리 될 수 있습니다.